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8.(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어르신정책과)

○ 제출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6. 8. 24. (의안번호 : 26-85)

2. 제출이유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등)

2) 필요성

- 노인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에서 경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및 사업 전반

1)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2)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3) 재가노인복지사업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99, 2~3층(공덕동) (☎ 02-365-7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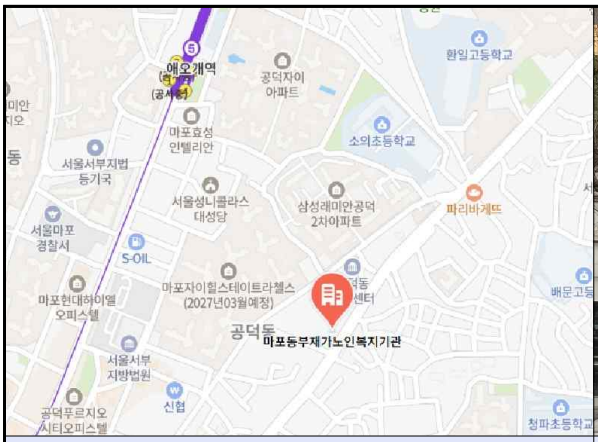
2) 시설현황

-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19층(지상 2~3층 사용)
- 면　　적: 267.24㎡(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시설 면적)
- 층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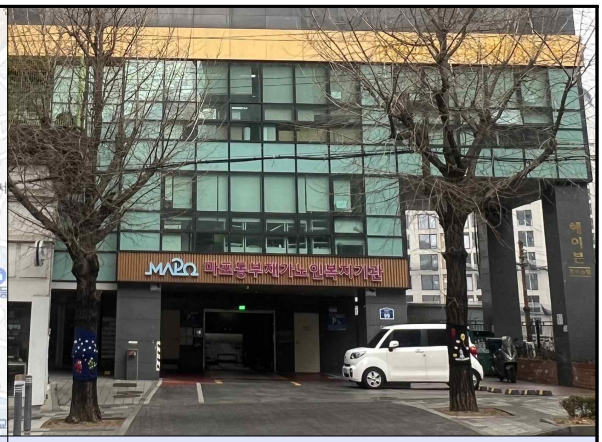
층별	용 도	면적(㎡)	비고
계		267.24	
2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112.69	
3층	관장실/회의실, 사무실, 상담실, 직원휴게실	154.55	

3) 수탁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4)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경

마. 위탁기간: 5년(2027. 1. 1. ~ 2031.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6년 예산기준)

1) 소요예산: 1,994,154천원

(국비 486,320천원, 시비 915,741천원, 구비 592,093천원)

2)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계	1,994,154		
운영비	254,763	·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253,563천원 · 종사자 복지포인트: 1,200천원	
사업비	1,739,391	· 노인맞춤돌봄(돌봄시비, IOT 포함): 1,714,574천원 · 무료급식지원사업: 24,817천원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서울시)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

2)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2026. 9.
-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2026. 9. ~ 2026. 11.
- 협약체결: 2026. 12.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의 위탁사무가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민간위탁기간은 2027. 1. 1~2031. 12. 31까지 5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

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 관련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위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어르신정책과	장미정 (8860)	박경미 (1691)

참 고 자 료

1.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